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중소기업청장

1. 개정 이유

‘13.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벤처 창업·금융 규제 개선대책”이 확정되었고 동 대책의 과제로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 하향 조정”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8953, Fax : 042-481-4418)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출자금 총액이 <u>30억원</u> 이상일 것. (이하 생략)</p> <p>2.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출자금 총액이 <u>20억원</u> 이상일 것. (이하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2) 481 - 4422